

복리후생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과세사업을 하는 회사가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될까?

부가가치세법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접대를 위한 목적이 아닌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종업원 복리후생목적 콘도회원권은 업무용 자산으로 봄

콘도미니엄이란 원래 1950년대 이탈리아의 중소기업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공동으로 휴양용 별장을 건설, 운영해 온 것이 그 시초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대로라면 법인의 콘도이용권구입은 종업원 복리후생목적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콘도의 의미는 호텔과 별장의 장점을 갖춘 관광숙박시설로, 특히 접대문화가 발달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콘도회원권을 접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도 많기에 언뜻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회사가 콘도회원권을 구입한 경우 실제의 사용 사실 등을 파악하여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콘도를 구입·사용한 경우라면 업무에 관련된 자산으로 보도록 통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면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아닌 회사 임직원은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지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사람에는 주주(소액주주제외) 아닌 회사의 임직원은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차원의 콘도회원권이라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진지하게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였다면 그 구입관련지출비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이후 이용비용 및 연회비 등 해당액에 대한 매입부가세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회사가 과연 진실로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 법인46012 - 3030, 1997. 11. 26

콘도미니엄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콘도미니엄을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법인이 취득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22601 - 1411, 1986. 04. 30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 취득 또는 임차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의 사용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종업원 복리후생목적 콘도회원권은 업무용 자산으로 봄

복리후생 목적으로 콘도미니엄을 취득한 경우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콘도미니엄을 특정 임원들에 대해서만 사용하게 한다거나 또는 접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1265.2 – 275, 1982. 1. 29

개인사업자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콘도미니엄을 매입한 것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